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면된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예우 회복〉
■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67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명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6.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①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생략)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단서 신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단서 신설> 3. 4. (생략)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경우.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우. 다만,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헌법 제85조¹⁾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경호·경비, 비서관·운전기사, 사무실·교통·통신비, 의료지원, 기념사업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1)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한편, 현행법 제7조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³⁾ 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우를 배제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이러한 예우 배제 규정은 1995년 개정 당시,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에게까지 광범위한 예우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으로, 국가 최고권력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⁵⁾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5)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법률 제5118호) 개정이유

전직대통령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전직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②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현행법은 예우 배제 사유 및 그 효과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일단 배제된 예우를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탄핵결정으로 예우가 박탈된 경우에는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안이유 및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⁶⁾

이는 탄핵결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면 또는 형 집행을 종료된 경우에도 예우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형벌의 목적과 별도로 ‘예우 박탈’이 사실상 영구적인 인격적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 예우 배제 규정은 탄핵결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예우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된 것인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6) 대구일보,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개선해야...‘국민통합과 국가 품격 위해 필요’”, 2025.12.23. <https://v.daum.net/v/20251223160505472?f=p>

일정 기간의 경과 또는 사면 등을 이유로 연금, 의료, 교통 등 일체의
예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직대통령 예우정지를 회복시키는 것의 적절
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내란·이적·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이 형 집행 만료만으로 예우를 회복하
도록 하는 것이 법질서 및 공무원·교사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⁷⁾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7) 공무원, 교사가 범죄 등으로 당연퇴직·파면된 후 사면·복권되더라도 복직 또는 연금 회복이
되지 않는 사례 등